생생이 흐르는 금강 새시대

신고기한
2020.05.04까지

납부기한
2020.07.31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월말 결산 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

대구광역시북구
BUK-GU DISTRICT, DAEGU CITY

주요 안내 내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부기한 '20년 신고대상 법인소득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고기한 : '20. 5 .4.(월)
- 납부기한 : 기존 '20. 5. 4. → **연장 '20. 7. 31.(금)**

※ 연결법인 및 3월 · 6월말 결산법인도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이 직권 연장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 ·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 **지원내용** **납부기한연장 1년이내(최대2년범위)**

● **신청방법**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우편 · 팩스로 신고

위택스 전자신고 안내

인터넷 지방세 신고 ·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서 게재 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법인소득분 신고하기

02 대행인신청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시간 : 07:00 ~ 23:30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과세대상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분	내국법인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소득 모두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4,200만원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3천억원 초과	2.5%	94,200만원	65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 × 2.5%)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 기한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제103조의23)
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법인세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와 동시(제103조의24)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세지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right] \div 2$$

• 안분신고 관련 안내

각사업장 |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종 업 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건 축 물 |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신고시 제출서류

분류	종류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안분명세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43호의9) → 해당 법인만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42호의4) 제출 필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구조(지방세법 제103조의21)

구분	내용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표준세율(1%~2.5%)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미환류소득 :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9%(20억 초과 1.2%)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공제·감면세액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 (단,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
(+) 가산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등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 (당초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법 제103조의30)

구분	내용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안분신고 과세체계

구분	내용
납세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신고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소재지
안분대상	산출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안분율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 \div 2$ ※ 소숫점 6자리
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등 첨부 ※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신고시 안분신고 편리
특·광역시내 신고납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달성군은 별도

안분신고 유의사항

-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 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 등 포함
-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다만,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 · 저유조 · 저장창고 · 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용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매출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음)
  -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세부적용기준(지칙 제38조의5 관련) [별표 4]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안분방법

총부담세액≥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사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4,000원,
본점 A(70%), 지점 B(30%), 특별징수지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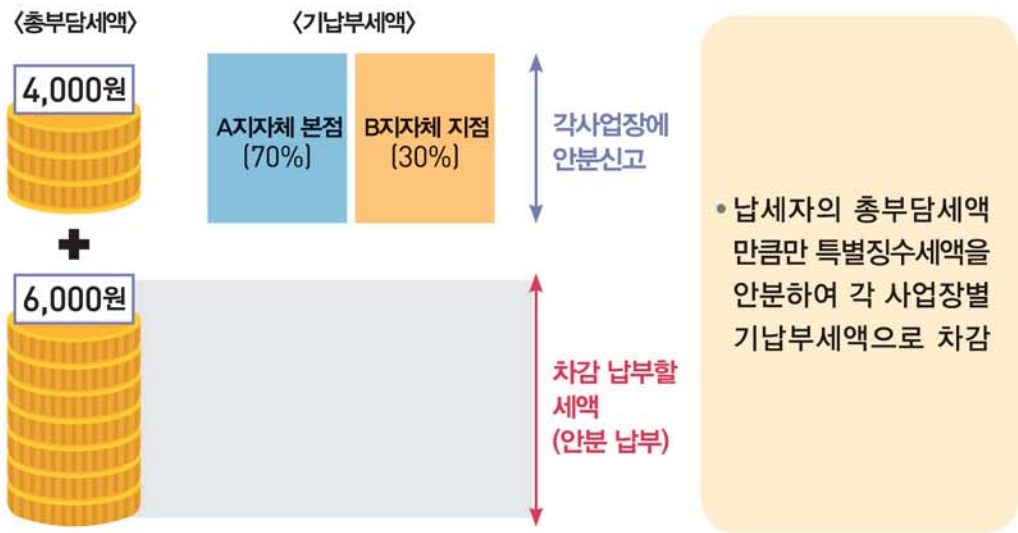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지자체(70%)	B지자체(30%)	C지자체	D지자체
총부담세액		10,000원		2,000원	2,000원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기납부세액	총 액	4,000원			
	안 분	2,800원	1,200원		
차감납부할세액		4,200원	1,800원		

총부담세액 <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분은 본점가산

사 례

총부담세액 10,000원, 특별징수세액 31,000원,
본점 A(70%), 지점 B(30%), 특별징수지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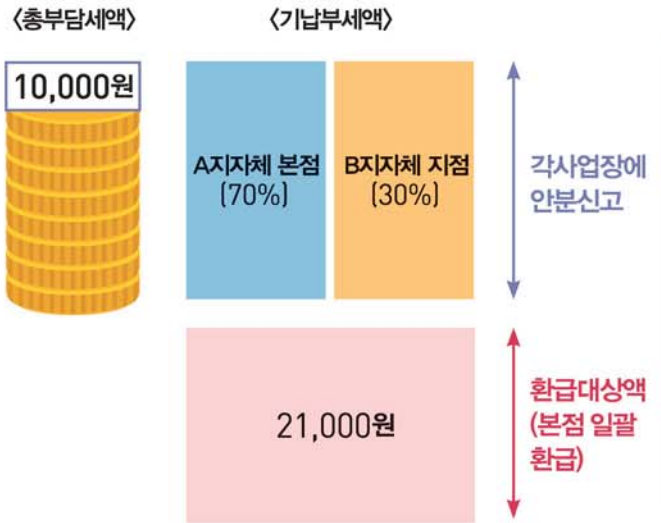

- 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차감 후 남은 특별징수 환급대상액(특별징수세액-총부담세액)을 본점(주사무소)의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지자체(70%)	B지자체(30%)	C지자체	D지자체
총부담세액		10,000원		10,000원	21,000원
안분세액		7,000원	3,000원		
기납부세액	총 액	31,000원			
	안분대상액	10,000원(총부담세액 상당액)			
	안 분	7,000원	3,000원		
	본점가산	21,000원 (31,000원-10,000원)			
	소 계	28,000원	3,000원		
차감납부할세액		-21,000원	0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 - 법인세액 - 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 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소득 지급시**

▶▶ 원천징수 (1,400원) ▶▶ 세 무 서

▶▶ 특별징수 (140원) ▶▶ 지 방 자 치 단 체

▶▶ 실지급액 (8,460원) ▶▶ 소득자(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대상)**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방법) 위택스 전자제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파일, CD, 서면, 우편)

▶▶ **(제출기한) 2월 말까지**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 위택스 공지사항 확인

특별징수된 법인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으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확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를 제출하며
안분내역 작성 시 **기납부세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하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후 본점소재지에서 환급** 받습니다.

☑ 특별징수납세지(은행 지점소재지 등) 지자체에 납부한 세액을 이체 받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서 환급하므로 **납세지 오류 기재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동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하나의 자치단체(시·군·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첨부서류(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면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단,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14년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함
  ※ '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10%를 신고납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 외국 3. 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기업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⑯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1. 정기신고
영리법인 상장법인	11	71	81	91		⑰신 고 구 분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법인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영리법인 기타법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⑱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⑲결 산 확 정 일	
⑳신 고 일						㉑납 부 일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㉓주식변동	1	2	㉔장부전산화	1	2
㉕사업연도의제	1	2	㉖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㉗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㉟본점/지점여부	1. 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㊱특·광역시 주사업장여부	1. 여	2. 부	
㊲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㊳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㊴납세지별 산출세액						㊵납세지별 세액공제·감면액	
㊶납세지별 가산세액						㊷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신고	납부(환급)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㊸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㊹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㊺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㊻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㊼금융기관명		㊽예금주	
	㊾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 과세표준계산

⑩⑧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⑩⑨	이 월 결 손 금	
⑪⑩	비 과 세 소 득	
⑪⑪	소 득 공 제	
⑪⑫	과 세 표 준 (⑩⑧ − ⑩⑨ − ⑪⑩ − ⑪⑪)	
⑮⑨	선 박 표 준 이 익	

2. 산출세액계산

⑪③	과 세 표 준 (⑪② + ⑮⑨)	
⑪④	세 율	
⑪⑤	산 출 세 액	
⑪⑥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⑪⑦	지 점 유 보 소 득 에 대 한 법인세 산출세액	
⑪⑧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⑪⑨	합 계 (⑪⑤ + ⑪⑧)	

3. 납부할세액계산

⑫⑩	산 출 세 액 (⑫⑩ = ⑪⑨)			
⑫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②	차 감 세 액			
⑫③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⑫④	가 산 세 액			
⑫⑤	가 감 계 (⑫⑩ − ⑫① − ⑫③ + ⑫④)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⑫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⑫⑦	수 시 부 과 세 액	
		⑫⑧	특별징수납부세액	
		⑫⑨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⑬⑩	소 계 (⑫⑥ + ⑫⑦ + ⑫⑧ + ⑫⑨)	
		⑬①	신고납부전가산세액	
	⑬②		합 계 (⑬⑩ + ⑬①)	
⑬③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⑬④	감면분추가납부세액			
⑬⑤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⑫⑤ − ⑬② ± ⑬③ + ⑬④)			

4.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⑬⑦	과 세 표 준						
⑬⑧	세 율						
⑬⑨	산 출 세 액						
⑭⑩	감 면 세 액						
⑭①	차 감 세 액 (⑬⑨ − ⑭⑩)						
⑭②	공 제 세 액						
⑭③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⑭④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⑭⑤	가 감 계 (⑬⑨ + ⑭③ + ⑭④)						
기납부세액	⑭⑥	수 시 부 과 세 액					
	⑭⑦	( ) 세 액					
	⑭⑧	계 (⑭⑥ + ⑭⑦)					
⑭⑨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⑭⑤ − ⑭⑧)						

5. 미환류소득법인지방소득세

⑮⑩	미 환 류 소 득						
⑮①	세 율						
⑮②	산 출 세 액						
⑮③	가 산 세 액						
⑮④	기 납 부 세 액						
⑮⑤	이 자 상 당 액						
⑮⑥	차감납부할세액 (⑮② + ⑮③ − ⑮④ + ⑮⑤)						

6. 세액계

⑮⑧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⑬⑥ + ⑭⑨ + ⑮⑥)						
⑮⑨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⑯⑦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⑮⑧ + ⑮⑨)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미환류 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청렴韓세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문의

기 관	전화번호
대구시청	803-6352
중 구 청	661-2093
동 구 청	662-2453
서 구 청	663-2445
남 구 청	664-2447
북 구 청	665-2435
수성구청	666-2354
달서구청	667-2082
달성군청	668-3932

지방세 성실납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